

2023 감염병 신고활성화 사업

# 법정감염병 길라잡이

#의료기관편



2023 감염병 신고활성화 사업

# 법정감염병 길라잡이

#의료기관편



# CONTENTS

## 01 감염병이란? 03

## 02 감염병 감시의 목적 04

- 감시란? 04
- 법정감염병 종류 05
- 법정 감염병의 주요증상과 대응 06
- 법정감염병 신고 및 보고체계 06

## 03 법정감염병 신고 및 보고체계 07

- 신고의무자 07
- 신고시기 07
- 신고범위 07
- 신고해야 할 감염병환자 등 08
- 제1급감염병 08
- 제2급감염병 09
- 제3급감염병 09
- 제4급감염병 10
- 신고방법 10
-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10

### ☑️ 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이란?



# 01 감염병이란?

## ❖ 감염병이란

- 감염병이란 병원체(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등)가 인간이나 동물의 몸 안에서 증식하여 다수에게 전파되는 질병
- 우리나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감염병을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에 따라 제1급~제4급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음

구분	전수감시 감염병			표본감시 감염병
	제1급감염병 (17종)	제2급감염병 (21종)	제3급감염병 (28종)	제4급감염병 (23종)
특성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제1급~제3급 감염병 외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신고	즉시 신고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격리	음압격리 등	격리		

\* 전수감시(Mandatory Surveillance): 감염병 발생시 의무적으로 지체없이 관할보건소에 신고하는 방식

\* 표본감시(Sentinel Surveillance): 일정한 기준에 의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하여 7일 이내에 관할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에 신고하는 방식



# 02 감염병 감시의 목적

## ❖ 감시란?

감염병 발생, 감염병병원체·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여 결과를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

- 대상 질병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의 크기 예측
- 질병 발생의 추이 관찰
- 질병의 집단 발생 및 유행 확인
-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어 예방·관리 활동 등에 적용

· **감염병 감시를 위해서는** 감염병 신고가 필수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기초자료로서 이를 통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 건강위해와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 법정감염병 종류

구분	제1급감염병(17종)	제2급감염병(21종)	제3급감염병(28종)	제4급감염병(23종)
종류	1. 에볼라바이러스병	1. 결핵	1. 파상풍	1. 인플루엔자
	2. 마버그열	2. 수두	2. B형간염	2. 회충증
	3. 라싸열	3. 홍역	3. 일본뇌염	3. 편충증
	4. 크리미안콩고출혈열	4. 콜레라	4. C형간염	4. 요충증
	5. 남아메리카출혈열	5. 장티푸스	5. 말라리아	5. 간흡충증
	6. 리프트밸리열	6. 파라티푸스	6. 레지오넬라증	6. 폐흡충증
	7. 두창	7. 세균성이질	7. 비브리오패혈증	7. 장흡충증
	8. 페스트	8.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8. 발진티푸스	8. 수족구병
	9. 탄저	9. A형간염	9. 발진열	9. 임질
	10. 보툴리눔독소증	10. 백일해	10. 쓰쯔가무시증	10. 클라미디아감염증
	11. 아토병	11. 유행성이하선염	11. 렙토스피라증	11. 연성하감
	12. 신종감염병 증후군 <sup>1)</sup>	12. 풍진	12. 브루셀라증	12. 성기단순포진
	13.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13. 폴리오	13. 공수병	13. 침구곤달름
	14. 중등호흡기 증후군(MERS)	14. 수막구균 감염증	14. 신종후군출혈열	14. 반코마이신내성 장알균(VRE) 감염증
	1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5.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15.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15.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16. 신종인플루엔자	16. 폐렴구균 감염증	16.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16.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17. 디프테리아	17. 한센병	17. 황열	17. 다제내성아시넨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18. 성홍열	18. 덩기열	18. 장관감염증 <sup>2)</sup>	
	19.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19. 큐열	19. 급성호흡기 감염증 <sup>3)</sup>	
	20.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20. 웨스트나일열	20. 해외유입기생충 감염증 <sup>4)</sup>	
	21. E형간염	21. 라임병	21.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22. 진드기매개뇌염	22.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23. 유비저	23. 코로나바이러스19**	
		24. 치쿤구니야열		
		25.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FTS)		
		26.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27. 엠폭스*		
		28. 매독		

1) 신종감염병증후군: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2) 장관감염증: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장독소성대장균(ETEC) 감염증, 장침습성대장균(EIEC) 감염증, 장병원성대장균(EPEC) 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타균 감염증, 리스 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아스트로바이러스감염증,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사포 바이러스 감염증, 이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작은와포자충 감염증, 원포자충 감염증  
 3) 급성호흡기감염증: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클라미디아페렴균 감염증  
 4)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리슈만편모충증, 바베스열원충증, 아프리카수면병, 사가스병, 주혈흡충증, 광동주혈선충증, 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특소 포자충증, 메디나충증

\*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4호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엠폭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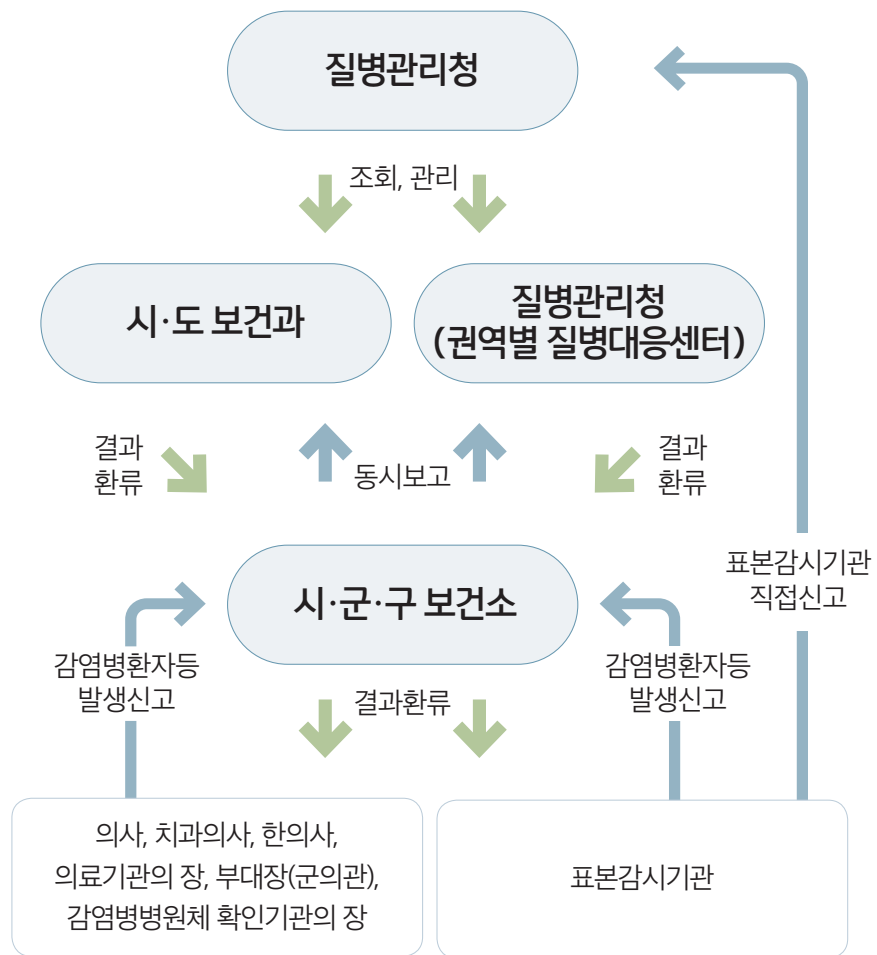
\*\*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5호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법정 감염병의 주요증상과 대응**

- 감염병별 주요 특성과 증상에 대한 설명서인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참조



❖ **법정감염병 신고 및 보고체계**



\* 결핵: 의료기관등 → 보건소 → 시도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 에이즈: 의료기관등 → 보건소 → 시도 → 질병관리청



**03 법정감염병 신고 및 보고체계**

❖ **신고의무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원)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그 밖의 신고의무자
------------------------	----------	----------------	------------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소속 의료기관장 →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보건소장** 신고

※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관할 보건소장** 신고

- 군의원 → 소속 부대장 보고 → **관할 보건소장** 신고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소속 직원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장 → **질병관리청장** 또는 **의뢰한 기관의 관할 보건소장** 신고

- 그 밖의 신고의무자 : 제1급감염병~제3급감염병 발생한 경우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 진단 및 검안 요구 또는 **관할하는 보건소장** 신고

❖ **신고시기**

구분	신고대상	신고기간
<b>제1급감염병</b>	① 환자 등 발생(진단) ② 환자 등 사망 ③ 병원체 확인 ④ 검사거부자(의사환자로 신고하면서 비교란에 검사거부자로 명시)	즉시
<b>제2급, 제3급감염병</b>	① 환자 등 발생(진단) ② 환자 등 사망 ③ 병원체 확인 ④ 검사거부자(의사환자로 신고하면서 비교란에 검사거부자로 명시)	24시간 이내
<b>제4급감염병</b>	① 환자 등 발생(진단) ② 환자 등 사망	7일 이내
<b>예방접종 후 이상반응</b>	이상반응 발생	즉시

❖ **신고범위**

- 환자: 해당감염병에 부합되는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진단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 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감염병이 의심되며,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거나 추정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 병원체보유자: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 신고해야 할 감염병환자 등

감염병환자 등	법적 정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 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 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감염병의사환자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병원체보유자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 제1급감염병(17종) : 즉시 신고

범례 ○:신고대상임, ×:신고대상이 아님

제1급감염병	환자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특징	격리
에볼라바이러스병	○	○	×	바이러스성 출혈열	음 압 격 리
마버그열	○	○	×		
라싸열	○	○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	×		
남아메리카출혈열	○	○	×		
리프트밸리열	○	○	×		
두창	○	○	×	생물 테러 가능 질환	
페스트	○	○	×		
탄저	○	○	×		
보툴리눔독소증	○	○	×		
야토병	○	○	×		
신종감염병증후군 <sup>1)</sup>	○	○	×	신종 감염병 등(호흡기 전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	×		
신종인플루엔자 <sup>2)</sup>	○	○	×		
디프테리아	○	○	×		

1)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혈당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2) 신종인플루엔자 : 2009-2010년 대유행한 인플루엔자 A(H1N1)pdm09가 아닌 향후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타입의 인플루엔자를 의미함(인플루엔자 A(H1N1)pdm09는 신종인플루엔자 신고대상이 아님)

구분	바이러스성 출혈열	생물 테러 가능 질환	신종 감염병 등(호흡기 전파)
증상	38도 이상 발열, 발진, 점상 출혈	질병에 따라 다름	38도 이상 발열, 호흡기증상, 폐렴+설사/구토
의심 상황	유행지역 방문력 (주로 아프리카 등)	노출 가능한 특수상황	유행지역 방문력
잠복기	2~21일	다양	~10/14일
진단	검체(체액, 혈액)에서 특이유전자 검출(PCR)		
조치 사항	1. 즉시 신고 →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이송하여 검사 *단,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 신고의료기관 입원격리 가능 2. 환자는 의료기관내에서 이동하지 않도록 함 3. 접촉 환자, 의료진, 보호자 파악		

❖ 제2급감염병(21종) : 24시간 이내 신고

- 격리가 필요할 정도로 감염성이 높거나, 전파 차단이 필요한 감염병
- 조치사항
  - 의심환자 : 신고하면 관할보건소 통화 후 필요 시 보건소에서 환자 방문하여 검사
  - 상급병원 전원 : 의뢰서에 의심 병명 기재, 환자는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 이용 권고, 마스크 착용

제2급감염병	환자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특징	격리
결핵	○	○	×	호흡기 질환- 접촉, 비말, 공기	격리 필요
수두	○	○	×		
홍역	○	○	×		
백일해	○	○	×		
유행성이하선염	○	○	×		
풍진	○	○	×		
폴리오	○	○	×		
수막구균 감염증	○	○	×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	○	×		
폐렴구균 감염증	○	○	×		
한센병	○	×	×		
성홍열	○	○	×		

제2급감염병	환자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특징	격리
콜레라	○	○	○	소화기 질환- 접촉	격리 필요
장티푸스	○	○	○		
파라티푸스	○	○	○		
세균성이질	○	○	○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	○	○		
A형간염	○	○	○	접촉	
E형간염	○	×	○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	×	○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목(CRE) 감염증	○	×	○		

범례 ○:신고대상임, ×:신고대상이 아님

❖ 제3급감염병(28종) : 24시간 이내 신고

-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 낮은 감염병 → 격리 안함
- 발열 + 질환별 다양한 증상
- 감별 진단을 위해 검사가 필요, 확진 검사 어려운 경우 상급병원 전원

범례 ○:신고대상임, ×:신고대상이 아님

제3급감염병	환자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특징	격리
파상풍	○	×	×	모기/진드기 매개, 인수 공통 감염병	격리 안함
B형간염	○	×	×		
C형간염	○	×	○		
레지오넬라증	○	○	×		
일본뇌염	○	○	×		
말라리아	○	○	○		
비브리오패혈증	○	○	○		
발진티푸스	○	○	×		
발진열	○	○	×		
쯔쯔가무시증	○	○	×		
렙토스피라증	○	○	×		
브루셀라증	○	○	×		
공수병	○	○	×	해외 유입 질환	
신증후군출혈열	○	○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	○		
크로이츠펬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펬트-야콥병(vCJD)	○	○	×		
웨스트나일열	○	○	○	매개, 인수 공통 감염병	
라임병	○	○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	×	피부-접촉	
황열	○	×	○		
덴기열	○	×	○		
큐열	○	○	×		
진드기매개뇌염	○	×	×		
유비저	○	○	×		
치쿤구니야열	○	×	○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	○		
엡폭스	○	○	×	격리 필요	
매독 <sup>1)</sup>	○	×	○		

1) 매독 신고범위(24.1.1 개정) : 1, 2, 3기 매독, 선천성매독, 조기 잠복매독

❖ 제4급감염병(23종) : 정해진 표본 감시기관에서 7일 이내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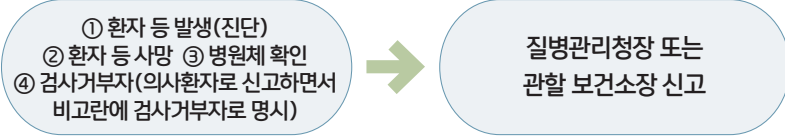
- 제1급~제3급 이외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STD, 기생충 질환, 주요 내성균

※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매독 감염병이 기존 4급에서 3급으로 전환(’24.1.1시행)

제4급감염병	환자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제4급감염병	환자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인플루엔자	○	○	×	성기단순포진	○	○	×
회충증	○	×	×	침규곤딜물	○	○	×
편충증	○	×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	○
요충증	○	×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	○
간흡충증	○	×	×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	○
폐흡충증	○	×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	○
장흡충증	○	×	×	장관감염증	○	×	×
수족구병	○	○	×	급성호흡기감염증	○	×	×
임질	○	○	×	해위유입기생충감염증	○	×	×
클라미디아 감염증	○	×	×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	×
연성하감	○	×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	○

❖ 신고방법

- 제1급, 제2급, 제3급감염병



※ 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043-719-7979)

- 관할보건소 : 웹 또는 팩스\*전송

\*의료기관 등에서 팩스로 전송(신고)할 경우 보건소에서 전산시스템에 신고내용을 입력함



- 감염병(발생, 사망(검안)) 신고서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3서식]
-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5서식]

※ 신고서식 개정('24. 1. 1. 시행)

※ 결핵은 별도의 신고서식(「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고 필요

※ HIV/AIDS는 별도의 신고서식(「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고 필요

· 제4급감염병(표본감시감염병)

-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질병별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매주 화요일에(전주 일요일~토요일) 관할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함

❖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 제1급, 제2급감염병 : 500만원 이하 벌금
  -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4: 보고/신고 의무 위반하거나 방해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신고한 자
- 제3급, 제4급감염병 : 300만원 이하 벌금
  - 감염병예방법 제80조: 보고/신고 의무 위반하거나 방해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신고한 자
- 200만원 이하 벌금
  - 감염병예방법 제81조: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세대주 관리인 등이 신고하지 않도록 한 자

✓ 복잡한 감염병 신고,  
개편된 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으로 간편하게!

❖ 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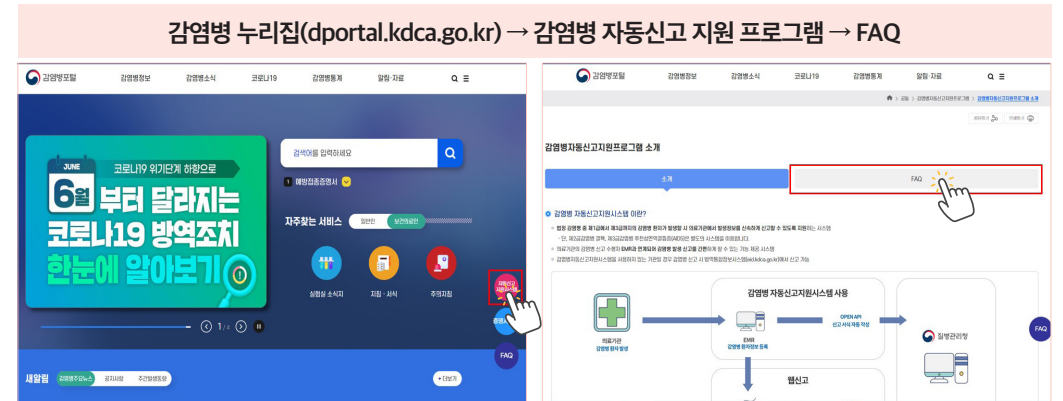
- 법정감염병 환자 발생 시 질병관리청 시스템을 접속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의 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감염병 발생 신고를 지원하는 시스템

❖ 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 사용 시 장점

- 간편한 신고 질병관리청 시스템에 접속하지 않아도 즉시 신고 가능
- 빠른 신고 신고 서식을 자동 작성하여 감염병 신고정보 중복 입력 불편 해소
- 정확한 신고 잘못 입력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입력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신고 가능

❖ 자동신고지원시스템 사용 신청 및 안내

- 자동신고지원시스템 개편 내용 및 사용자 가이드



❖ 문의사항

구분	사업문의	기술지원
담당	한국보건 의료정보원 방역정보화부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단 KTDS 컨소시엄
유선전화	02-6263-8353	070-7599-1511~2
이메일	bts@k-his.or.kr	idm@goability.co.kr